

3부: 주요 용어 및 정의

공인 이중 언어 구사 직원(Certified Bilingual Staff): 현행 업무의 일부로 언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공중보건 인사부의 인증을 받은 이중 언어 구사 직원입니다. 이런 직원은 영어 이외의 언어를 읽고, 쓰고, 말하는 데 능숙하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. 아래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통역사가 아닌 공인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은 환자 맞춤형 의료 통역을 할 수 없습니다.

통역(Interpretation): 구사된 말이나 수화를 원래 언어의 의미와 어조를 충실히 유지하며 다른 언어로 전달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.

언어 접근성(Language Access): 영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포함해 합리적인 언어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, 자원,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.

언어 접근성 민원(Language Access Complaint): 언어 접근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거나(예: 통역 품질), 아예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민원 제기를 의미합니다. 공공 보건의 민원 제기 절차는 제 6.b 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
영어 외의 언어(LOTE):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자(Limited English Proficient) 또는 영어 학습자(English Language Learner)라고도 하며,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읽기, 쓰기, 말하기 또는/및 이해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사람(LEP):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지 않으며 영어를 읽고, 말하고, 쓰고,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의미합니다. 이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보 이해를 위해 언어 접근성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의료 통역(Medical Care Interpretation): 특정 환자에 대한 임상 상담, 진단,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통역을 의미합니다. 일반적인 건강 교육과 같은 모든 의학 관련 정보는 이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.

선호 언어(Preferred Language): 개인이 읽기, 쓰기, 말하기 또는 수화를 할 때 개인이 가장 선호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.

번역(Translation): 서면으로 작성된 내용을 의미를 그대로 살려 다른 언어로 전달하는 작업입니다

자격을 갖춘 통역 업체(Qualified Interpretation Services Vendor):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업체로서 공중 보건국과 계약을 맺고 공인된 언어 및/또는 수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.

자격을 갖춘 통역사(Qualified Interpreter): 의료/의료 통역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간 언어 또는 수화 통역에 있어 의미를 추가, 생략, 왜곡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통역을 하는 사람입니다.

중요 문서(Vital Documents): 카운티 프로그램, 혜택 또는 서비스의 등록, 참여 유지 또는 중단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.

중요 기록(Vital Records): 출생, 사망, 태아 사망/사산, 결혼/동거, 이혼과 같은 중대한 생활사를 기록하는 주 및 지역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식 증명서입니다.

